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567호 2016. 11. 30.(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2016-12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협조 3
- 거창군 고시 제2016-121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인가 고시 5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16-1143호 공인등록 공고 6
- 거창군 공고 제2016-1145호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 7
- 거창군 공고 제2016-1156호 담배소비업 폐업 공고 14
-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6-12호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6-13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3
-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6-14호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58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6-50호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63

회 람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감사실 (055-940-3043, 행정 3043)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1. 30.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5길 10-10 외 8건(부여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89-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5길 10-10	2009-04-01	2016-11-30	거열로의 시작점에서 부터 다 섯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639-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3길 12	2009-04-01	2016-11-30	장팔길의 시작점으로 부터 분 기되는 세번째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509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개화길 394-27	2009-04-01	2016-11-30	개화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리 410-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상천길 57	2009-04-01	2016-11-30	행정구역명 상천을 이용하여 상천길로 명명	
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221-17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동1길 27	2009-12-28	2016-11-30	조선명종 때부터 남산동이라 불리던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 된 첫번째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072-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신1길 171	2009-12-28	2016-11-30	고학의 새로생긴 마을이라 불 여진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1434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길 284-16	2009-04-01	2016-11-30	대현리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 된 도로	
8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307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소룡길 193-43	2009-04-01	2016-11-30	마을 뒤에 소룡산이 있어 불 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824-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병산1길 129-90	2009-04-01	2016-11-30	마을 뒷산이 병풍과 같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 된 첫번째 도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변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지조성(과수원 조성)

2. 사업내역

(단 위 : 천 원)

위 치	사업시행면적(㎡)			개간 용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신청면적				주 소	성 명
		당초	변경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543-3번지(임)	9,783	4,506	4,358	과수원 조성	2015. 12. 17. ~ 2016. 12. 31.	경남 거창군 신원면 철마길 979	박 윤 순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6년 11월 30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공고 제2016 - 1143호

공인 등록 공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거창군 지적관련 위원회 운영에 따른 공인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 등록 사유

가. 거창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청인 제작

나. 거창군 지적재조사사업위원회 운영에 따른 청인 제작

2. 등록 공인

가. 등록 공인 : 2점

나. 최초 사용일 : 2016. 12. 1.

3.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거창군 경계 결정 위원회 인	3.6cm×3.6cm	
거창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인	3.6cm×3.6cm	

2016. 11. 28.

거창군수

재단법인 거창문화재단 임원(이사, 감사) 공개모집 공고

거창군의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확보 및 전문화를 위해 설립되는 거창문화재단 임원(이사, 감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1월 일

거창군수

1. 채용분야 및 인원

직 위	모집인원	주요업무	채용기간
선임직 이사 (비상임)	7명	○ 거창문화재단의 기본 운영 방침 등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	2년 이내 (연임가능)
선임직 감사 (비상임)	1명	○ 거창문화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분야 감사	2년 이내 (연임가능)

※ 비상근, 무보수 임원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 지급

2. 응시자격

직 위	응모자격
선임직 이사 (비상임)	○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한 학식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공헌하거나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재단 업무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가능한 그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선임직 감사 (비상임)	○ 회계 및 감사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연령·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4.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6. 11. 28.(월) ~ 12. 6.(화) / 9일간
- 접수기간 : 2016. 11. 30.(수) ~ 12. 6.(화) 18:00까지 / 7일간
- 접수처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일요일은 접수불가) / 우편, 팩스 등 접수불가
- 제출서류
 - 가. 응시지원서 1부.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1매(3.5cm×4.5cm)
 - 나.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다.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력사항 기재
 - 라. 임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 마.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각 1부.
 -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응시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거창군청 홈페이지(www.geochang.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선발방법

- 서류심사(거창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 가.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빙서, 자격증 등 응모자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
 - 나. 구비서류 중 부적격 사항이 한 항목이라도 있으면 선발대상에서 제외
 - ※ 접수결과 응모자 수가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공개모집 예정
- 거창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거창군수(이사장)가 최종 임용 대상자 결정
- 일정수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정 직위에 대하여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 2016. 12. 12.(월) / 개별통지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지원서와 제출서류의 기재 잘못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모자의 책임입니다.
- 응모자의 자격이 채용기준에 미달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TEL.055-940-34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응시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임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거창문화재단 임원 응시지원서

직 위 명		접수번호	
-------	--	------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성 명	[한글]	[한자]
	적	주 민 호	-	
	사	주 소		
	항	전 화	[자택]() -	휴 대 전 화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 재 지	학 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병역 사항	병 역	필 ,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 격 및 면 허	종 류	취득년월일

경 력 사 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위와 같이 거창문화재단 임원 응시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11월 일
지 원 자 (서명)

거창군수 귀하

응 시 표	성명	한 글		응시번호		사 진 불 필 요	
		한 자		직 위 명			
	주민등록번호						
	2016년 11월 일 거 창 군 수						

자 기 소 개 서

공모직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분야별 대표성 및 전문성, 지역사회 인지도 및 평판, 문화관련 기여도, 분야별 활동경력 등 응시자의 능력 및 그 동안의 사회 활동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2016. 11. .

작성자 ○ ○ ○ (서명)

임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본인은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재)거창문화재단 임원(이사, 감사) 공개모집 응모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조회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서명)

거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거창문화재단 임원 공개모집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체크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구 분	세 부 내 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원 임용을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병역사항, 자격·면허 등 임용 관련 제반사항 (제출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포함)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3년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임용절차에 제한이 따름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 제공사항은 임용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용진행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16. 11. .

성명 : (서명)

거창군수 귀하

담배소매업 지정취소(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지정취소(폐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번호	구분	성명	영업소재지	상호	폐업일자
2013-5470057 -05-6-00025	일반	정*라	거창군 가조면 마상4길 91-2	CU 거창가조점	2016.11.30.

2.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된 서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가. 접수기간 : 2016. 12. 1. ~ 2016. 12. 8. 18:00 (7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수 및 문의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상공담당 (☎055-940-3373)

다. 신청서류

- (1)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비치)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1부.
- (4) 본인 신분증
- (5)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예: 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마. 추첨안내

- (1) 추첨(예정)일 및 추첨 장소 : 지정기준 적합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 (2) 주의사항 : 추첨 불참 시 소매인지정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2016년11월30일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24.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시행 2016.9.28)의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군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사항 구체화(안 제16조)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금지 및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금품 수수 금지
-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의 금품수수 금지

- 예외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되는 금품 등 열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사항 구체화(안 제18조)
 - 강의 등의 대가로서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금지
 -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 및 반납 조치
 - 월3회 이상 외부강의시 의장의 사전승인 필요
- 경조사 등의 통지 제한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강화함.(안 제22조 및 제25조)

4. 입법예고기간 : 2016. 11. 24. ~ 2016. 11. 30. (6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jhkim0829@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의회사무과 **【☎055)940-80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거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거창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거창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

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그렇지 않다.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9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의원은 안건심의 등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거창군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따른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7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 되거

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

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사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3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2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

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6조에 따른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6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6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 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거창군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2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창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35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6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 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6조제3항제1호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8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역구	
성명	한글		선거구분	비례대표	
	한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위		재직기간		
	보수	월	원	전화번호	
	주소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거창군의회 의원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이해관계 직무 회피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회피직무	<input type="checkbox"/> 의안심사 <input type="checkbox"/> 예산심의 <input type="checkbox"/> 행정감사조사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회의	
회피원인	<input type="checkbox"/>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내용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17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청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5호 서식] (제17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Blank space for detailed activity report)
----------------------	--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거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주소	연락처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주소	연락처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의회 의장

귀하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품 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제14호 서식] (제25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 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품 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접수번호	신고일	품목(상표)	수량	가액(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인도경위	관리부서(관리자)	보관장소	처리내용	처리일	의장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직급)	성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30.] [법률 제14145호, 2016.3.29., 일부개정]

-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7519호, 일부개정 2016. 9. 27.]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 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24.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17년도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인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2016년도 월정수당에서 3.0%를 인상코자 함.

3. 주요내용

- 월정수당 금액 변경 (안 제6조 제2항)
- 1,653,830원 ⇒ 1,703,440원

4. 입법예고기간 : 2016. 11. 24. ~ 2016. 11. 30. (6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iron7979@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의회사무과 **【☎055)940-80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1,653,830원”을 “1,703,440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p> <p>① (생 략)</p> <p>② 월정수당은 월 <u>1,653,830원</u>으로 한 다.</p>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1,703,440원</u> -----.</p>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8., 2014.6.3.>
 -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 3. 월정수당: 별표 7에 따른 금액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25.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안 제1조)

나.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 시책 마련 및 추진, 관계법령의 책무 성실 이행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라. 복지단체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마.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안 제6조)

바.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시행을 명시함(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16. 11. 25. ~ 2016. 11. 30. (5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50132)에게 서면이나 메일(rinuma@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의회 의회사무과 **【☎055)940-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채용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21.]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1. 29.

거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산업변화에 부응하여 향노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향노화, 향노화산업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군수는 거창군이 향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1) 향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 2)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
- 3)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 4)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 5) 한방약초 생산과 가공제품 생산지원, 판로개척
- 6) 향노화 힐링특구 지원
- 7) 그 밖에 향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향노화산업 지원사업 및 지원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1)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 100퍼센트 이내
- 2) 향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 100퍼센트 이내
- 3) 향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향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 50퍼센트 이내
- 4) 향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 50퍼센트 이내
- 5) 한방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 100퍼센트 이내
- 6) 한방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 50퍼센트 이내
- 7) 그 밖에 군수가 향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한 지원율

마. 향노화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12조)

4. 입법예고기간 : 2016. 11. 29. ~ 2016. 12. 19.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향노화산업과, 우편번호 501147)에게 서면이나 메일(baesun21@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향노화산업과
【☎055)940-82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향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군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노화”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노화산업”이란 항노화를 위해 사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항노화를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제조·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
3.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한방약초 생산과 가공제품 생산지원, 판로개척
6. 항노화 힐링특구 지원
7.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과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 100퍼센트 이내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100퍼센트 이내
3. 항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50퍼센트 이내
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0퍼센트 이내
5. 한방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100퍼센트 이내
6. 한방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 50퍼센트 이내
7.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한 지원율

제7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2. 항노화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활동
3. 지원계획 수립·변경
4. 항노화산업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항노화산업 담당과장, 항노화산업 관련 담당공무원
2.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항노화 관련 학과 대학교수 및 강사
4. 항노화 관련 기업체 대표 및 단체·법인 대표
5. 항노화 관련 경작 농업인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회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향노화산업 담당주사로 한다.
- 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11호, 2016.3.29.,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